

# 서 면 답 변 서

○ 이종필 의원

## (질 의) 급식비리 척결을 위한 교육청 감사 기능 강화

1) 2015. 2. 17. 민원 접수된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사건은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 감사관의 감사 후, 10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내 급식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교장과 행정실장의 징계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2016. 8. 11. 서울서부지검은 의뢰된 사건과 관련하여 교장과 행정실장의 횡령은 없는 것으로 하고, 위탁을 받은 급식 용역업체대표와 이에 가담한 몇 명의 학교 급식담당직원을 불기소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를 하였으며, 더욱이 충암학원과 행정실장 등은 당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3인)을 형사고발(검찰취하)하고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2016.6.23.)을 제기한 상태임.

서울시 고등학교 중 국공립은 118개이며, 사립학교는 200개로 전체의 63%가 사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교육청 감사결과를 사학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육청의 학교 관리감독 행정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교육청 감사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감사관의 기능 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교육청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검이 학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15년 10월 작성한 교육청 민원조사 결과보고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다수의 추정(10여회 언급)과 전화조사결과 등으로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이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감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폐식용유의 판매량이 타 학교에 비교하여 20%정도 적은부분을 지적하여 횡령금액을 산출한 부분은, 표본 세 학교 간에도 10%정도(40.1%, 30.5%)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정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 제시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금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교육청 위상이 크게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에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며 교육청이 지원한 비용을 학교가 방어적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

상기와 같이 본 의원이 사안을 보는 심각성에 대하여 감사기능 강화부분과 소송대응방안 부분으로 구분하여 답변하기 바람.

(답 변)

○ 신뢰성 있는 감사기관 정립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방안

충암고등학교는 2011년 실시한 감사에서도 이미 학교회계예산 횡령 등이 확인되어 고발 및 전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내부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가 접수되어 이루어진 민원조사에서 학교와 급식 관련 업체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교급식 배송용역과 식재료 구입 시의 수의계약 서류, 의료보험 납부 내역, 식용유 구입 내역과 폐식용유 매각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만 급식배송 용역업체가 급식비 횡령을 부인하는 가운데 식재료 횡령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다수 급식종사자 전화 진술을 통하여 횡령액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학교와 배송용역 업체의 비협조 속에서도 배송용역 업무일지에 기재된 인원 전체와 급식실 조리종사 인원 전체의 연락처를 입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지적은 객관적 증거보다는 다수의 추정과 전화조사 결과 등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이지만 그 불가피성은 당시 상황에서 기인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식용유의 경우 표본 세 학교 간 차이로, 추정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정한 횡령금액이 최소한의 추정 횡령금액으로서 폐식용유 매각대금 뿐만이 아니라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의 진술에도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이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사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를 목표로 감사업무 수행 직원들과 시민감사관들에

대한 연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관 기능 강화를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충암학원 제기 소송 대응 방안

2016.8.16. 검찰은 충암학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감사관 등을 불기소 결정하면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하여도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검찰발표 급식비 횡령 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칙대로 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정결함보조금을 비롯한 학교운영비에서 학교법인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종합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 회수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 의) 급식비리 척결을 위한 교육청 감사 기능 강화**

2)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14건의 학교급식 식중독이 발생 2,052명이 피해를 입었고, 2건의 일부위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영관리 급식에서 발생하였으며 2015년 6건은 원인조차도 규명하지 못하여 재발 방지가 되고 있지 않음.

또한, 교육청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분위탁과정에서 급식비리가 다수 발생하였고, 2017년부터는 “학교급식기본방향”의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급식을 전체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전환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면적인 직영 운영시에도 상기와 같은 식중독 문제와 식재료 공급과정에서의 특정업체선정 등 비리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 변)**

○ 최근 3년간(‘14~’16) 서울지역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건수는 14건(발생인원 환례수 2,052명)이며, 직영 급식학교에서 11건, 일부위탁 급식학교에서 3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역학조사기관(자치구보건소,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원인조사·분석결과에 의하면, 외부반입 식품오염 1건, 학교급식 원인제공 2건, 원인불명 8건, (2016년)원인조사중 3건입니다.

- 2014년 식중독 발생 건수 중 외부반입 식품오염 판명 1건은 관계기관(부서)에서 행정처분을 시행하였고, 학교급식 원인판명 2건은 지자체 과태료(300만원) 부과, 학교장 경고 등을 조치(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식중독 발생 6건은 모두 원인불명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역학조사기관(자치구보건소,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추정 감염원 역학조사 결과, 조리종사자 및 조리환경은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조리종사자의 인체검체에서 병원체가 '불검출'되어 연관성이 없으며, 보존식에서도 검사결과 '불검출'되어 감염원 추정이 어렵다는 결론임)
- 학교급식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① 급식학교의 식중독 예방활동 및 식품취급·조리과정 위생관리 강화, ② 식중독 위기경보 상황(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을 문자메시지(SMS)로 학교현장에 실시간 안내, ③ 식약처와 연계한 정부3.0 빅데이터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매월 초), ④ 서울식약청과 연계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실시(영양(교)사, 학교장), 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위생관리 취약 및 식중독 발생 학교 등), ⑥ 학교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특별 위생·안전점검 실시, ⑦ 서울시(자치구)와 연계한 식중독예방 합동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정에서의 특정 업체 선정 등 비리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① 업체선정 시 투명성 제고(업체선정 심의 절차 준수 등), ② 식재료 구매 시 계약방법 등에 대한 지방계약법령 준수 철저 ③ 상시 감시 강화(정기·수시 업체 실태점검, 신고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④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등 우수 제품 사용 ⑤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강화 등을 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지도, 감독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